

『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1년 6월 29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1년 6월 30일

라. 상정일자 : 2011년 7월 11일

제163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자치행정국장 강 재 용

나. 제안이유

- 주민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택지개발과 아파트신축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,
- 과대·과소한 통리반을 분리 또는 통폐합 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함.

다. 주요내용

- 10개 통·리 증설 (안 별표2, 별표25, 별표26, 별표27)
 - 통·리 : 595개 통리(통 427, 리 168)
⇒ 605개 통리(통 434, 리 171)
- 88개반 증설, 1개반 폐지(안 별표2, 별표9, 별표15, 별표25, 별표26, 별표27)
 - 반 : 4,269개반 ⇒ 4,356개반(87개 반 증설)

라. 참고사항

- 「지방자치법」 제4조의2 제5항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백 승 결

○ 본 조례안은

- 택지개발과 아파트신축 등 통리반 조정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지역에 대하여 과대·과소한 통리반을 분리 또는 통폐합함으로써 주민 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조례안임.

○ 주요 내용은

- 통리는 595개 통리에서 고아읍 3개리, 인동동 2개통, 진미동 2개통, 양포동 3개통 등 10개 통리의 증설로 605개 통리로 조정하였고,
- 반은 4,269개반에서 고아읍 10개, 송정동 1개, 형곡1동 2개, 인동동 26개, 진미동 13개, 양포동 36개 등 88개반을 증설하면서, 인동동 1개반을 감하여 총 87반이 증가된 4,356개반으로 조정하였음.

○ 검토결과

- 본 조례안은 아파트신축 등으로 지역여건이 변화된 지역의 통리반을 조정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,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,
- 생활권과 일정기준의 가구 수 등을 고려하여 통리반이 합리적으로
적정하게 조정되었는지의 검토가 요구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